보건행정학과 현장실습 관리·운영 지침

[의료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지침 제0001호, 043-830-8858]

제　　정 2020. 10. 06.
일부 개정 2020. 10.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학지원처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행정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대상은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학생으로 한다.

제2장 교과목 및 이수학점

제3조(교과목) ① 현장실습 교과목에는 “현장실습”교과목과 “보건및병원행정실습”이 포함된다.
② 현장실습 교과목은 의무기록 부서에서, 보건및병원행정실습은 원무, 총무 등 병원행정 부서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이수학점 등) ① 현장실습 교과목과 보건및병원행정실습 교과목은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의 필수이수 교과목으로 정하고, 과목별 3학점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교과목과 보건및병원행정실습 교과목은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을 100% 포함한다.
③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현장실습 교과목과 보건및병원행정실습 교과목 중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현장실습 교과목과 보건및병원행정실습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각 교과목별 현장실습 담당교수로 하며 책임자의 자격은 전임교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10.23.>

제3장 현장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의무

제5조(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배정) ① 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은 시설 및 규모, 실습할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분야 실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선정하되 병원급 이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기관 규모별 배정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현장실습 계약) ① 교과목별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단, 현장실습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② 현장실습 협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계획
2.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 안전조치
3. 실습생에 대한 실습비 지원 등 수혜조건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산학협동협약이 체결되어 별도 협약이 필요 없는 업체는 현장실습 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실습경비) ①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는 현장실습기관에서 정하며 학교에서 부담한다.

②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경비를 기관으로 기한 내 송금 한다.

제8조(현장실습기관 임무)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관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획된 시간에 충실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험실습 기구의 사용을 보장한다.
2. 현장실습기관의 장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실습생을 위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3. 현장실습기관의 장 현장실습 책임자를 임명하고 실습생을 총괄하며, 실습 근태상황을 파악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현장실습기관의 실습학생이 문제나 사고가 있을 경우 즉시 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할 부서의 직무기술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의무기록부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기술서, 기타 행정부서는 해당부서 직무기술서)
2. 실습할 기관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실습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태도를 유지한다.
4. 직업 환경 및 직무 수행 상황에서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숙지하고 현장실습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5. 실습생은 현장실습 파견 전 준비교육자료(지침서)에 포함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기술서, 의사소통 및 태도, 직업 환경 및 직무 수행 상황에서의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성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학생의 권리보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기술서, 현장실습 시 필요한 기관 또는 부서의 주요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사항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10.23.>
6.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현장실습을 통해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실습

제10조(실습시기) 현장실습은 3학년 동계 방학 또는 4학년 하계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자인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현장실습 파견 전 준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제11조(실습기간)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3주(120시간)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실습대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실습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산업체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2. 감염병 등의 사유로 실습 운영이 제한될 경우
3. 개인의 사고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습이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13조(실습평가) ① 현장실습평가는 현장교육담당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0.10.23.>

② 현장교육담당자는 [별표 2]의 현장실습평가 기준에 따라 [별표 3]의 현장실습 이수증 및 평가서에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실습평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실습기관의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0.23.>

제5장 실습지도 및 평가

제14조(실습지도) ① 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대상 학생에게 현장실습 파견 전 준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실습관련 지침서를 제공한다.

② 현장실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과에서는 현장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자인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순회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③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현장실습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하여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④ 학교는 현장실습 담당교수에게는 현장실습 지도비를 지급한다.

⑤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학과 회의에서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한다.

제15조(종합 평가) ①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된 학생의 현장실습일지,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이수증 및 평가서,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현장실습 교과목의 성적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절대평가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실습 기관 규모별 부서별 배정인원

	의무기록 부서	원무, 총무 등 행정부서
병원급	1명	1~2명
종합병원급(대학병원 제외)	1~2명	1명 이상
대학병원급	1명 이상	1명 이상
상급종합병원급	1명 이상	1명 이상
그 밖의 전공분야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1~2명	

[별표 2] 현장실습평가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평가주체	평가구분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현장실습 담당자	태도	▪ 실습에 임하는 태도(성실성)	6
		▪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6
		▪ 실습장의 관리와 정리정돈 태도	6
		▪ 용모, 복장, 언행의 단정한 정도	6
		▪ 협동심 및 직원 간의 원만한 이해관계	6
		▪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6
	전문성	▪ 실습내용 수행 능력(신속, 정확, 완결성)	6
		▪ 실습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 정도	6
		▪ 새로운 실습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6
	출석	▪ 출퇴근 상황	6
총 점			60점

* 상기 60점 외에 실습일지 등을 평가한 4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함.

<보건및병원행정실습 교과목>

평가주체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현장실습 담당자	▪ 근무 태도	10
	▪ 활동능력	35
	▪ 조직 적응력 및 성실도	35
	▪ 출석	10
	▪ 기타(특기)	10
총 점		60점

[별표 3] 현장실습평가 이수증 평가서

〈현장실습 교과목〉

현장실습 이수증 및 평가서

실습부서명 :

대학명	학과명	학년	학번	성명	실습기간

		6	5	4	3	2	1
1	실습에 임하는 태도(성실성)						
2	실습내용 수행 능력(신속, 정확, 완결성)						
3	새로운 실습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4	실습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 정도						
5	용모, 복장, 언행의 단정한 정도						
6	협동심 및 직원 간의 원만한 이해관계						
7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8	출퇴근 상황(근면성)						
9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10	실습장의 관리와 정리정돈 태도						
	문항별 소계						
	총 점						

위 학생은 본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완료하였으며 실습결과를 위와 같이 평가 함.

20 년 월 일

평가기관 _____ 평가자 : 직위_____ 성명_____(서명)

<보건및병원행정실습 교과목>

병 원 행 정 실 습 평 가 서

현장실습부서	기관(병원):		부서:		
실 습 생 인 적 사 항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성명	학번	
	집전화	( )	핸드폰		
현장실습교과목	교과목명	보건 및 병원행정실습			
실 습 기 간	구분	학년 학기	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실습일수	4주	총 실습시간	160시간	

근무태도 (10%)	출 석 (10%)	활동능력 (35%)	조직적응력 및 성실도 (35%)	기 타 (특기) (10%)	총 점 (100%)

-실습병원담당자:
-연락처:

【실습평가】

20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병원장 (직인)